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44
----------	-----

제출년월일 : 2004. 2. 27.

제 출 자 : 고성군수

1. 개정사유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의무에 관한 규정 및 감량의무이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 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
-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의 강화를 위하여 다른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을 당해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통보, 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
-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 마련. (안 제7조)
- 우리군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제2항)
-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 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하도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하도록 함. (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군수의 지도·점검의무를 규정하는 조항 마련. (안 제14조)

3. 참고사항

-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준칙(환경부 2002. 11)
- 입법예고 : 2003. 12. 8. ~ 12. 28. (특이사항 없음)

4. 본문 : 덧붙임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을 “고성군음식물류 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로 한다.

제2조제4호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하고, “원형 그대로”를 “가축의 먹이로”로 하며,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을 “재활용”으로 한다.

제6조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을 “제6조제1항제5호”로 하고, 동조제1호·제2호·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 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 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호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하며, “군수는”을 “군수는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하여”로하고, 동조제2호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제 2호서식”을 “제3호서식”으로, “제3호서식”을 “제4호서식”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2).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 (3).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9조제3항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하며, “내구성이 있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재질”을 “내구성 있는 재질”로하고, “색상은 청색으로”를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하고, “전용수거용기 용량을 30리터, 60리터, 120리터, 240리터로 제작하여 사용한다”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로하며, 동조제2항중 “100세대”를 “20세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하고,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수집·운반 및 처리”로 하며 “다만,”을 삭제하고,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로하며, 동조에제4항·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을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치단체의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고, “징수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업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조·제2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4조·제4조(제1항·제2항)·제5조·제5조(제1호·제2호)·제8조·제8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9조(제1항·제2항)·제10조(제3항)·제11조·제11조(제1항·제2항·제3항)·제12조(제1항·제3항)·제13조(제1항)·별표 3·별표 4·<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중 “음식물쓰레기”를 각각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별표 1, 2,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예시)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등은 행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 별표 2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크기 및 용도

종류별 (용량: ℓ)	높이 (cm)	나비 (cm)	두께 (mm)	입구로부터 담는선까지 길이	용도
3	39.5	22	0.025	12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5	46.5	26	0.025	13.2	“
10	56.5	33	0.025	15.5	“
20	69.5	42	0.030	18.4	“
30	78.5	48	0.035	20.3	“
50	91.5	56	0.040	22.8	“

< 별표 5 >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군수가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0	100	200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	50	100	200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2조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0	500	1000
	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변경신고서 포함),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0	200	30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2조관련)	1000	3000	5000

[별지 제2호서식]

신고번호 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신 고 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사업장 규 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²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kg/월			
자가감량 처리계획	감 량 처 리				부산물 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 일 자	처 리 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kg/일		kg/일	kg/월		
자가재활용 계 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위탁재활용 계 획	위 탁 재활용량	재활용 방 법	위탁업소명	업 종	위탁업소 주소·전화		
고성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여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명 : <u>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u></p> <p>제2조(정의)1.~3.(생략)</p> <p>4. “<u>음식물쓰레기 재활용</u>”이라 함은 <u>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u></p> <p>5. ~ 6. (생략)</p> <p>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u>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u>) <u>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u></p> <p>1. <u>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향한다)을 설치·운영하는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축산가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u></p>	<p>제명 : <u>고성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u></p> <p>제2조(정의)1.~3.(현행과 같음)</p> <p>4. “<u>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u>”----- -----<u>가축의 먹이로</u> ----- ----- -----<u>재활용</u>----- -----</p> <p>5. ~ 6. (현행과 같음)</p> <p>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 <u>음식물류 폐기물</u> -----) <u>음식물류 폐기물</u> ----- ----- -----<u>제6조제1항제5호</u>----- ----- <u>음식물류 폐기물</u> ----- -----</p> <p>1. <u>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u></p> <p>2. <u>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 하여야 한다</u></p> <p>3. <u>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신 설></p> <p>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u>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p>	<p>2. <u>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u></p> <p>3. <u>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u></p> <p>4. <u>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u></p> <p>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u>음식물류 폐기물 -----</u> <u>-----</u> <u>-----</u> <u>-----</u></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1. 별지 제1호서식의 <u>음식물쓰레기</u>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u>군수는</u>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2. <u>음식물쓰레기</u>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1. ----- <u>음식물류 폐기물</u> ----- ----- ----- -----<u>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u>-----</p> <p>2. <u>음식물류 폐기물</u> ----- ----- ----- 제3호서식 ----- ----- ----- 제4호서식 ----- -----</p> <p>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u>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u>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p> <p>(2). <u>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u>을 변경한 경우</p> <p>(3). <u>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u>한 경우</p>

신·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①~②(생략)</p> <p>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재질로 제작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은 청색으로 한다.</p>	<p>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①~②(현행과 같음)</p> <p>③음식물류 폐기물 -----내구성 있는 재질-----</p> <p>-----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p>
<p>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군수는 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 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전용수거용기 용량을 30리터, 60리터, 120리터, 240리터로 제작하여 사용한다.</p> <p>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③(생략)</p>	<p>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 ①-----</p> <p>-----음식물류 폐기물-----</p> <p>-----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p> <p>②----- 20세대-----</p> <p>----- 음식물류 폐기물-----</p> <p>-----음식물류 폐기물-----</p> <p>③(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생략)</p> <p>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③ (생략)</p> <p><신 설></p>	<p>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 -----) ① (현행과 같음)</p> <p>②음식물류 폐기물----- ----- ----- ----- -----수집· 운반 및 처리----- ----- ----- (삭제) ----- ----- ----- ----- -----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을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 (생략)</p> <p>② <u>음식물쓰레기</u>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u>음식물쓰레기</u>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u>음식물쓰레기</u>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와 같이 수수료를 징수한다.</p>	<p>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음식물류 폐기물</u> ----- <u>음식물류 폐기물</u> -----</p> <p>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p>
<p>제14조(음식물쓰레기의 적정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별표 1] - 현행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찌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비닐, 병뚜껑, 패각류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별표 1] - 개정안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예시)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등은 행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별 표 2] - 현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크기 및 용도

봉투용량 (ℓ)	크 기 (가로 x 세로 (cm))	용 도	비 고
3	22 x 26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5	26 x 31	"	
10	33 x 40	"	
20	41 x 49	"	
30	48 x 59	"	
50	56 x 67	"	

※ 비 고 : 봉투상단 여분의 길이 (cm) = $\frac{\text{가로길이(cm)}}{\pi} + 5 \text{ cm}$

[별 표 2] - 개정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크기 및 용도

종류별 (용량: ℓ)	높이 (cm)	나비 (cm)	두께 (mm)	입구로부터담는 선까지길이	용 도
3	39.5	22	0.025	12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5	46.5	26	0.025	13.2	"
10	56.5	33	0.025	15.5	"
20	69.5	42	0.030	18.4	"
30	78.5	48	0.035	20.3	"
50	91.5	56	0.040	22.8	"

[별표5] -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폐기물관리법	1.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 관련)			
	가. 음식물쓰레기를 군수가 정한 전용 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0	100	200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50	100	200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 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0	500	1,000
	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신고서,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0	200	300
3.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16조제2항 관련)	300	500	1,000	

[별표 5] - 개정안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군수가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0	100	200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	50	100	200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2조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0	500	1000
	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변경신고서 포함),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0	200	30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2조관련)	1000	3000	5000

